

# 국내 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擴大方案



金 炳培

(經濟企劃院物價總括課·行政事務官)

## 1. 序

현행 국내石油類價格은 정부가 결정하여 流通段階別 최고가격으로 告示하고 있으며, 석유 제품의 輸出入과 정유공장의 新增設도 정부에 의하여 規制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내油價決定 구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安定基金의 징수에 의한 原油價格의 平均化와 其他生産費에 대한 부분적 競争導入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石油類價格決定 및 石油産業에 대한 정부개입은 精油社의 低價原油 導入과 經營합리화 노력을 阻害하였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國際原油情勢에 彈力的·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適應力을 배양하는데 障礙가 되어 왔다.

이러하여 政府는 81년 11월 油價調整時에 國內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며, 經濟企劃院은 82년 업무계획에서 經濟活動의 能率化를 위한 각종 制度改善의 일환으로 價格自律化幅의 확대를 밝힌 바 있다. 本原稿은 국내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확대에 관한 그 배경과 구체적 方案,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個人的인 의견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 2. 背景

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확대 문제가提起되게 된 背景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 가.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式의 指向

過去 수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정에서 資源의 配分과 民間企業의 의사결정에 關여하여 經濟成長에 肯定的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介入<sup>1)</sup>은,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否定的인 효과가 강조되는 등 그 限界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介入幅의 점진적 縮小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른바 競争體制를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 經濟運用에로의 전환이 그것이며 이는 過去의 지속적 經濟成長을 가능케 했던 또 하나의 주요한 變數인 民間企業家의 창의적 能力을 최대한 活用하고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통하여 資源의 효율적 配分과 경제활동의 能率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 나. 國際原油市場의 安定 및 油價單一化의 進展

國際原油供給은 79년의 제 2차 石油波動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代替에너지 開發等에 따른 原油需要의 減退로 '81年中 供給過剩 현상을 보였으며, '82年에도 均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原油市場의 공급과잉현상을 반영하여 産油國들은 81年中의 油價를 다투어 引下하였으며 81年 1月 29日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OPEC臨時會議에서는 78年 이후 3年만에 지리적인 位置 및 油

註：① 司空臺, LP 존스,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KDI, 1981. p 320

質에 따른 합리적인 價格幅을 설정하는 油價單一化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油價의 單一化로 基準原油價를 설정하여 국내 석유류가격에 반영하고 基準原油價와 導入原油價와의 差額을 安定基金으로 補填하여 주는 原油價平準化制度는 원칙적으로 볼 때,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며, 其他 生産費 뿐만 아니라 原油價에 대하여도 競争体制을 도입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었다.

### 3. 国内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力導入의 擴大方案

#### 가. 基本方向

表 1) 自由世界 石油需給実績 및 展望

(단위 : 百万배럴/日)

区 分	'79	'80	'81	'82
消 費				
先進 国	40.9	37.7	35.1	35.0
開 途 国	9.7	10.5	11.2	11.8
〈合 計〉	〈50.6〉	〈48.2〉	〈46.3〉	〈46.8〉
		(△4.7)	(△3.9)	(1.1)
供 給				
O P E C	30.7	27.2	24.5	24.7
非OPEC	20.2	21.1	21.2	21.6
〈合 計〉	〈50.9〉	〈48.3〉	〈45.7〉	〈46.3〉
		(△5.1)	(△5.3)	(1.3)
在庫變動	0.9	0.4	△0.5	△0.7
統計的不一致	0.6	0.3	0.1	0.2

資料 : DRI, International Energy Bulletin, Jul. 1981  
 註 : ( ) 内는 前年對比 增減率, %

上述한 바와같이, 民間主導에 의한 經濟運用의 필요성 高潮, 국제원유시장의 安定 및 原油價의 單一化等を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의 国内油價의 결정은 현재의 政府에 依한 결정방식에서 精油社에 依한 自律的 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政府는 源泉의인 需給安定과 公正去來秩序의 確立등 有效競争條件의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国内油價의 自律化는 精油社 및 관련부문의 受容態勢 確立과 補完對策의 수립등을 위하여 약 6개월 정도의 予告期間을 둔 후에 시행함바 람직 할 것이며, 일부 産油國에 對한 프리미엄의 存在等 原油價單一化가 未洽한 부문에 對하여는 原油價單一化의 進전상태와 國際原油市場의 動向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 나. 先行條件

油價의 自律化를 위하여는 몇가지의 先行條件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原油 및 石油類 需給에 對한 政府의 직접적 関與의 축소로서, 各 精油社는 自社에 가장 有利한 방식으로 原油 및 石油類 公需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政府는 原油導入先의 다변화, 石油需給의 안정 등 국가적인 次元에서의 간접적인 行割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精油社間 原價差異의 축소로서 精油社間 原價差異가 클 경우, 原價가 낮은 企業에는 過多 利潤이 발생하고, 原價가 높은 企業에는 經營赤字 가 발생하여 일부 精油社의 倒産 또는 精油産業의

〈表 2〉 油價單一化에 따른 油種別價格 比較

(단위 : \$/배럴)

油 種	油 質		'78 末	'81. 1月	'82. 1月
	A P I	硫黃含量	(油價單一化時)	(原油價自律化時)	(油價再單一化時)
Arabian-Light	33.4	1.80	12.70 (100)	32.0 (100)	34.0 (100)
Iranian-Light	33.5	1.40	12.81 (101)	37.0 (116)	34.2 (101)
Kuwait	31.2	2.50	12.27 (97)	35.5 (111)	32.3 (95)
Zueitina	40.0	0.23	13.90 (109)	41.0 (128)	37.0 (109)

資料 : 석유개발공사, 주간석유뉴스, '79. 10. 29. P33, '82. 1. 13. P35

註 : ( ) 内는 Arabian-Light를 基準으로 한 指數임.

寡占化 등 社会的·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精油社間 原価差異의 주요한 原因으로는 油價單一化의 未洽, 精油社別 其他 生動費 수준의 差異가 있으며, 이러한 要件이 充足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對한 對應方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다. 段階的 推進方案

현재의 國內要件과 上記 基本방향을 감안하여 國內油價의 自律化를 위한 단계적 試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一段階

國內油價를 精油社의 自律的 결정에 맡기되, 價格管理方式의 전환에 따른 혼란을 最小化 하기 위하여는 당분간 行政指導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公正去來制度의 理念에 맞추어 社別로 價格을 指導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安定基金에 의한 原油價 平準化제도도 첫 째로, 産油國 프리미엄의 廢止等 보다 완전한 油價單一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시키는 방법과 둘째로, 産油國 프리미엄만 분리하여 安定 基金에서 補填하고 殘余의 原油價에 대하여는 平準化制度를 폐지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後者の 경우에 有利한 조건의 原油導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의 일정 부분(90% 또는 80% 등)만을 補填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導入原油에 對한 Incentive 및 Penalty 制度는 原油價의 平準化제도와 같은 次元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二段階

油價自律化 실시후에 一定期間이 경과한 뒤, 油價에 대한 競争要件의 확립, 程度와 관련부문의 適応力等を 감안하여 油價自律化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行政指導도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油價의 自律化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原油價 單一化가 진전될 경우에는 安定基金에 의한 原油價 平準化제도도 廢止되어야 할 것이다.

#### 라. 補完措置

國內油價決定에 있어서의 競争導入의 확대란 國

內 생산자價格의 自律的 결정에 의한 競争導入 뿐만 아니라, 海外競争力の 도입은 물론이고 石油製品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新規參入의 制限撤廢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競争導入의 확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措置들은 消費者 선택의 幅을 擴大하고, 國內生産者의 一방적 價格引上을 억제할 뿐 아니라, 國內生産者 및 需要者의 경쟁합리화 및 國際化를 촉진할 수 있어서, 價格自律化에 따른 効果적인 補完措置가 될 것이다.

##### ① 石油 輸出入의 自由化 및 關稅制度의 彈力的 運用

石油의 輸出入은 현재 石油事業法에 의거 動力 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國內油價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輸出入의 自由化에 의한 海外競争力の 導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油種別 價格은 國際價格 構造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有效競争要件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石油製品에 대한 關稅率의 彈力的 運用도 주요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② 新規參入制限의 撤廢

石油精製業 및 販賣業은 石油事業法에 의거 動力 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油價自律化를 위하여는 이러한 生産 및 流通段階의 參入 制限要素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 ③ 公正去來秩序의 확립

油價自律化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이 必須的이며, 이를 위하여는 精油社間의 價格談合, 精油社의 不當廉売나 優越的 지위의 濫用 등의 不公正去來行爲의 排除를 위한 事後監視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라. 予想問題點에 대한 檢討

國內油價決定의 自律化를 포함한 競争導入의 擴大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 ① 關聯製品의 價格管理方式에 對한 검토要

石油은 國內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에너지源으로서 相關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油價의 自律化는 현재 特別法 等에 의거 政府가 관리하고 있는 基礎石油化學製品과 肥料等 石油多消費産業製品의 價格自律化 필요성을 提

高시킨다. 그러나 市場競爭原理의 경쟁 범위의 확대라는 觀點에서 石油多消費製品의 價格 自律化는 관련부문에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肯定的인 方向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限界企業의 經營不實 可能

油價가 自律化될 경우에 공급능력이 需要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國內生産者間에 가격 경쟁이 深化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 경우 原價가 높은 限界企業의 經營赤字가 發生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油價自律化에 따른 불가피한 歸結로서 적정한 準備期間을 두고 시행한다면 限界企業의 原價節減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長期적으로는 限界企業을 포함한 精油産業 전체의 競爭力을 제고시키고 國民경제 전체의 利益으로 歸着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奧地의 石油需給蹉跌 발생가능

현재는 均一輸送費를 製品價에 加算하기 때문에 精油社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流通段階別價格이 均一하도록 되어 있으나, 油價自律化가 실시될 경우에 精油社로부터 먼 거리에 位置하거나 輸送이 곤

란한 지역에서는 他地域보다 油價가 비싸지고 需給도 원활치 못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道路 擴充과 輸送施設의 발전, 현재의 需給狀況 등을 감안할 때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 4. 結 語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式로의 전환은 점차로 産業活動의 각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걸만이 우리 經濟가 날로 深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을 勘案할 때 國內 油價決定에 있어서 競爭導入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며, 問題는 이에 따른 副作用을 어떻게 最少化하느냐 하는 것이다. 國民經濟의 구성요소인 生産者, 소비자, 정부는 그들 相互의 관계가 零和關係(zero-sum relation)가 아니고, 正和關係(Positive-sum relation)임을 認識하고 國民경제의 장기적 成長發展을 위한 最善의 方策을 찾는 데 공동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

## □ 海外短信 □

### 인도네시아 작년도 原油生産실적 159万b/d

東南亞의 有力한 石油供給國인 인도네시아의 原油生産量이 增加一路에 있다. 스부로 토 鉦業·에너지相이 最近 밝힌 바에 따르면 昨年 1年間의 同國 原油-生産実績은 日量 159万bbl이 되어, 1977年 이래 4年만에 增加를 보였다.

OPEC의 減産決議와 價格凍結 決定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新規油田의 開發이나 增産努力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며, 政府關係者중에는 「82년에는 目標의 170万bbl 内外를 무난히 達成할 것이다」라고 擘視的인 見解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增加로 바뀐 것은 同國政府가 1977年에 수립한 探查開發을 위한 稅制上的 特

惠措置와 Pertamina(國營石油會社) 鉦區의 開放이 큰 契機가 된다. 이에 對應하여 外國石油會社가 잇따라 인도네시아에 進出, 新規油田과 再開發油田에서의 生産이 本 軌道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鉦業·에너지相의 說明에 따르면, 현재 Pertamina와 生産分與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外國콘트랙터(都給業者)는 70社.

昨年 1年間に 12社가 새로이 契約을 체결하였다. 콘트랙터가 保有하고 있는 鉦區는 스마트라, 자바, 카리만탄(舊 보르네오) 등 68個所에 이르며 18個의 鉦區에서 石油生産에 착수하고 있다 한다.\*